

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4월 11일
- 회부일자 : 2017년 4월 14일

3. 개정이유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감면율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시각장애인이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는 경우 면제 요건 강화
 - 종전 면제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에 말소 또는 이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(안 제2조)
 - *'18년부터 시행
-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 감면율 축소(안 제9조)
 - 현행 35/100 → 변경 25/100
- 물류단지개발 사업시행자 등 물류단지 감면 삭제(안 제10조)

-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감면율 축소
 - 현행 100/100 → 변경 50/100(안 제11조)
 - *'18년부터 시행
-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감면 삭제(안 제12조)
 - *'18년부터 시행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